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22,883,086 | 12,686,493 |
| 일반회계 | 386,709,135 | 11,601,274 |
| 특별회계 | 36,173,951 | 1,085,219 |
| 기타특별회계 | 36,173,951 | 1,085,21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4,024,130 | 420,724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7,542,646 | 526,279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08,333 | 12,250 |
|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| 4,031,728 | 120,952 |
|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| 167,114 | 5,013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5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13,736,531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